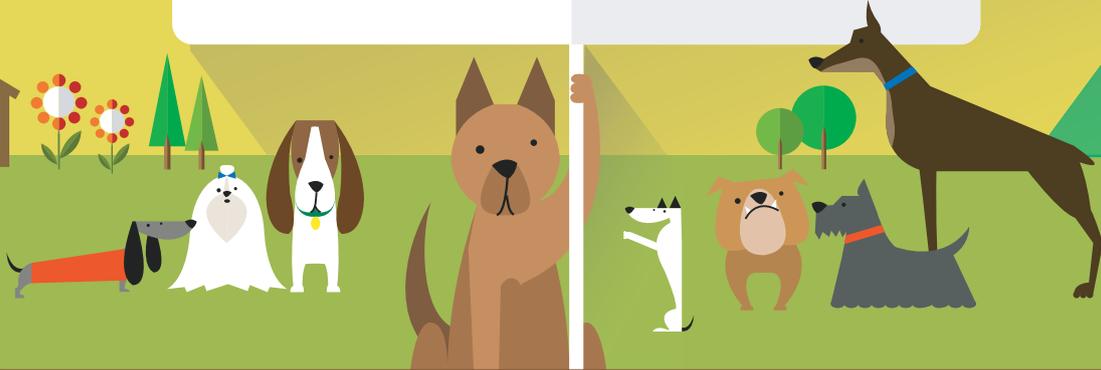


안전하고 행복한 반려동물 문화

지켜주면 우리 모두 행복하 **개**



맹견과 함께할 때 꼭 지켜야 할 안전조치



도사견



아메리칸
핏불테리어



아메리칸
스태퍼드셔 테리어



스태퍼드셔
불 테리어



로트와일러

- ▶ 맹견 외출 시에는 목줄과 입마개 필수입니다!
- 맹견과 외출 시에는 목줄·입마개 또는 이동장치를 꼭 구비해주세요.
- 위반 시 과태료 : 1차 위반 100만원 / 2차 200만원 / 3차 300만원

- ▶ 맹견은 어린이집,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들어갈 수 없어요!
-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도 출입이 안 돼요!
- 위반 시 과태료 : 1차 위반 100만원 / 2차 200만원 / 3차 300만원



맹견의 소유자이신가요? 그렇다면, 매년 3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들어야 합니다!



- ▶ 맹견 소유자의 경우 매년 3시간 이상 꼭 의무교육을 들어야 해요!
- ▶ 정기 의무교육은 맹견 훈련법, 사회화 훈련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. (기존 소유자는 '19.9.30까지 교육 이수)

※ 교육이수 방법 : 동물보호관리시스템(www.animal.go.kr)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수 가능
· 위반 시 과태료 : 1차 위반 100만원 / 2차 200만원 / 3차 300만원



1 반려견도 가족입니다. **동물등록 꼭 해주세요!**

- 등록 방법 : 시·군·구청 방문 또는 동물등록대행기관(동물병원 등) 방문
 - ※ 주소지 등 소유자 정보 변경 시 등록정보 수정, 사망 시 신고까지
 - 미등록 적발 시 과태료 : 1차 위반 20만원 / 2차 40만원 / 3차 60만원



2 반려견과 외출할 때에는 **목줄·인식표를 착용해주세요!**

- 타인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목줄을 채워주세요!
 - 위반 시 과태료 : 1차 위반 20만원 / 2차 30만원 / 3차 50만원
 - 목줄 등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이르게 한 자 :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
 - 목줄 등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: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- 인식표도 같이 부착해주세요!
 - 미부착 적발 시 과태료 : 1차 위반 5만원 / 2차 10만원 / 3차 20만원



3 반려견이 머물다 간 자리, **배변처리도 잊지 마세요!**

- 쾌적한 산책문화를 위해 외출 시에는 배변봉투를 꼭 챙겨주세요!
 - 미수거 시 과태료 : 1차 위반 5만원 / 2차 7만원 / 3차 10만원



4 지켜주세요! 사람과 동물 모두를 위한 **펫티켓**

- 타인의 반려동물을 만지기 전 반드시 동의 구하기
- 큰소리를 내며 갑자기 다가가지 않기
- 지나치게 반히 응시하지 않기
- 노란 리본을 발견하면 적당한 거리 유지
 - (*노란 리본 : 예민하거나 훈련 중인 강아지를 의미)



5 동물을 **학대**하거나 **유기**하면 안 돼요!

- 동물 학대와 유기는 범법 행위입니다.
 - ※ 동물학대의 범위 :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,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, 유실·유기동물 판매·살해 등
 - 동물학대 :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
 - 동물유기 : 300만원 이하 과태료
- 기르던 동물을 잃어버리셨거나 입양을 원하시나요?
 - 동물보호관리시스템(www.animal.go.kr) 확인
 - 시·군·구청에서는 유기·유실동물을 구조하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7일 이상 공고
 - 공고 후 10일이 경과해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동물은 입양 가능

